

한국교원대총학생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교육 담당
이슬기 교원대 총학생회장
발 신 하주희 민변 변호사
반값등록금본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제 목 법률에 근거 없이 징수된 국공립대 등록예치금 반환 소송 제기
날 짜 2015.3.3(총 8쪽)

보 도 자 료

법률적 근거없이 징수된 국공립대 ‘등록예치금’에 대한 첫 반환 소송 제기

- 전국의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문제가 되자 이름만 ‘등록예치금’으로 천박하게 바꾸어 그대로 강제 징수... 이에 맞서 한국교원대 학생 73명이 첫 번째로 반환 소송 제기
- 역시 기성회비를 전액 수업료로 이름만 바꾼 국립대 재정회계법, 본회의 통과돼선 안 돼

1. 2015년 1학기 대부분의 국공립대학 학생들에게 전에 없던 ‘등록예치금’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판단 받은 기성회비를 없애는 대신, 전국의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계속 받으려는 꼼수로 법률과 학칙에 근거도 없는 등록예치금을 징수한 것입니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국공립대를 만들어놓고도 끝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교원대총학생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등록예치금 징수를 강력하게 규탄함과 동시에, 먼저, 한국교원대 학생 73명을 원고(한국교원대 학생 현유정 외 72명)로 하여 등록예치금에 대한 첫 반환소송을 3.3(화)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예치금 반환청구 소장은 3.3(화)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였습니다(공익소송 담당 : 민변 하주희 변호사).

2. 전국의 국공립대학에서의 등록예치금 징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성회비는 자발적 후원금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성회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를 전액 등록예치금으로 이름만 바꾸어 징수하는 것 역시 불법·부당한 조치임.
- 특히,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 면제 대학인데, 이번(2015년 1학기부터) 기성회비로부터 전환된 ‘등록예치금’이라는 것이 수업료의 취지로 부과된 것이나 다름없음.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 회계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법률과 학칙에 근거 없는 등록예치금을 징수한 것도 큰 문제임.
- 국립대 회계법이 통과되더라도 통과 이전에 징수된 등록예치금에 대하여 소급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님.
- 한편, 기성회비 납부는 학생과 제3의 사적 임의단체인 기성회와의 관계인데, 국립대 회계법 제정안은 국가가 법률로써 기성회비의 수업료로의 전환을 강제한 것으로 역시 매우 부당한 조치라 할 것임.

3. 이번 소송에는 교원대 학생 73명이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3월 2일 단 하루 동안 원고를 모집하여 모은

숫자로, 학생들의 분노와 실망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등록예치금 반환청구 금액은 한국교원대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1인당 1,437,000원 또는 1,800,000원입니다.

4.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등록예치금 징수는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법원의 기성회비 반환 판결을 취지까지 거스르는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기성회비가 불법·부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기성회비에서 이름만 바꾼 등록예치금 징수도 불법·부당한 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회비는 학칙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등록예치금 징수는 별률 뿐만 아니라 학칙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더더욱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불법·부당하다고 판결 받은 기성회비를 전액 수업료로 강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립대 회계법 제정안이 국회 교문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국회는 본회의 국립대 회계법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 첨부 : 등록예치금 반환 소송 소장 전문

소 장

원 고 (원고 목록 별첨)

- 피 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2.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등록예치금 반환 청구 등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청구금액'란에 해당하는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은 한국교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갑 제1호증의 각 양식에 의해 2015년 1학기에 한국교원대학교 수입징수관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등록예치금”을 납부하고 등록한 자들입니다.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은 국립대학교의 설립·경영자이고, 한국교원대학교 수입징수관을 통해서 원고들로부터 징수하여 세입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다. 피고 교원대학교 총장

피고 교원대학교 총장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립대학교의 장으로서 교무를 총괄하고 있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라고만 합니다)에 의한 대학회계의 설치·운영자입니다.

2. 기초적 사실관계 - 등록예치금의 징수 및 납부

가.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한국교원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학교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습니다.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의 사업계획은 국립대학교 총장의 동의를 받아 기성회의 이사회가 의결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기성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립대학교 총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기성회는 규약에 따라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보통 회원들에 대한 기성회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국립대학교 소속 수입징수관(국고금관리법 제9조 이하 참조)과 국립대학교 기성회 회장은 공동명의로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였고, 위 고지서의 기재에는 수입징수관이 수납할 입학금, 수업료와 기성회장이 수납할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납부기간, 납부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칙에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여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 원고들을 비롯한 학생들은 고지된 금원을 일괄적으로 ‘국립대학교’ 명의의 계좌로 납부한 후 등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교원대학교는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와 입학금 없이 기성회비만 납부하였습니다.

나. 한국교원대학교 기성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이 징수되는 기성회비는 법령상 근거가 없이 징수되는 것으로서 한국교원대학교 기성회가 원고들을 비롯한 학생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2가합419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2014가합551022 판결, 현재 서울고등법원 계류중).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1997. 12. 13. 제정된 이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원고들 중 현행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2010. 1. 22.전 납부한 기성회비 분의 적용법령), 현행 고등교육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징수에 관하여는 제10항으로 분리하여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법이든 현행법이든 고등교육법은 규정 그 자체에 수업료 외의 ‘기타 납부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기타 납부금’에 기성회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고등교육법의 위임에 근거하여 2007. 3. 23.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제정된 구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각 학교에서 수업료, 입학금을 부과·징수·감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수업료 외의 ‘기타 납부금’으로 입학금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3) 그런데 법령상 일관되게 등록금의 범위에 포함된 수업료, 입학금과 기성회비는 법적 성격, 결정·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 실질적인 차이점이 명백하게 존재하므로 기성회비를 고등교육법상의 등록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업료, 입학금과 기성회비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등록금은 학생들이 입학 당시 일회성으로 내는 입학금과 각 학기 수업의 대가로서 매학기 내는 수업료를 중심으로 하여 매학기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에 등록하기 위하여 선급으로 납부하는 돈인데 반하여, 기성회비는 피고 이 사건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의 주요 방법으로서 그 회원이 각 규약에 근거하여

기성회에 내는 자율적인 회비이므로, 그 성격과 취지가 다릅니다.

② 따라서 각 금액의 결정·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도 기성회비는 피고 한국교원대학교 기성회가 담당하나(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이 그 예산의 편성과 집행사무를 수행하나 이는 피고 한국교원대학교 기성회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서 총장의 고유권한이 아니며, 총장 이하의 실무담당부서는 서로 구분됩니다), 등록금은 설립·경영자인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총장, 수입징수관이 징수·집행하는 것으로서 서로 명백히 구분됩니다.

③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정한 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서도 입학금, 수업료가 귀속되는 국고회계와 구분되는 비국고회계로서 기성회회계를 별도로 두고 기성회들의 각 장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정하되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이 피고 한국교원대학교 기성회의 예산 편성·집행 등 예산·회계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피고 한국교원대학교 기성회 규약과 이사회 의결에 기속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수업료, 입학금과 기성회비의 위와 같은 여러 차이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④ 또한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 역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

4) 혹여 만일 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기타 납부금'에 포함된다고 형식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헌법·법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등교육법에 기성회비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① 국립대학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바, 그 과정에서 국가가 특별한 공익적 사유 없이 원고들과 피고 한국교원대학교 기성회 사이의 자율적 회비의 납부라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개입하고 이를 고등교육법에서 원고들의 납부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사적 자치권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합니다.

② 만일 기성회비가 피고 한국교원대학교 기성회 소속 회원의 자율적 회비라는 당초의 성격에서 오랫동안의 관행을 거쳐 실질적으로는 재학생이 한국교원대학교의 수업을 받는 대가로 변질한 것이라면, 재학생은 이미 각 학기 수업의 대가로서 매학기 수업료를 내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기성회비라는 명목으로 다시 수업 등의 대가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더욱이 수업의 대가를 학교나 설립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납부하지 않고 제3의 사적 임의단체에 납부하는 것을 국가가 법률로써 강제하여야 할 특별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5) 결국 기성회비는 명목상으로는 자발적 기부단체이지만 실질은 수업료 등 인상에 대한 재학생의 저항과 피고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

었던 것입니다.

6)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기성회비를 고등교육법상의 '기타 납부금'으로 볼 수 없고 기성회비는 법령상의 근거 없이 징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등록예치금의 징수

이처럼 기성회비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한국교원대학교는 한국교원대학교 수입징수관 명의로 "등록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성회비 분을 포함하여 납부고지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등록예치금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등록예치금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

한국교원대학교는 2015학년도 1학기 "등록예치금"을 고지하면서 "명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즉 '항목'을 정하지 않고 미리 등록금 명목으로 일정금원을 '예치'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록예치금" 역시 법적 근거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서 명시하였듯이 고등교육법상의 '등록금'에 포함되는 '기타 납부금'에는 규범의 해석상 수업료와 입학금 이외의 것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일 "등록예치금"이 국립대학교의 고등교육에 대한 대가나 반대급부의 성격이 아님에도 고등교육법에서 재학생의 납부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경비를 부담시키는 부담금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는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그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서 법률의 근거 없이 등록예치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를 설치하는 법률조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 참조)에 관한 규정 역시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 부과·징수는 공법상 침익적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 명확성원칙이나 비례성원칙과 같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명확한 근거 없이 그 세부항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채로 부과되었음이 분명합니다.

2015. 3. 3.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 주 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